

감사계획

감 사 실

내부통제 적정성 진단을 위한 특정감사 실시 계획

2017. 8.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목적

- ☐ 내부통제¹⁾ 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 점검을 통한 내부통제 기능 강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 내부통제의 취약점 발견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을 통한 감사 사각지대 제거 및 부정·부패위험 사전 차단

2 감사 중점사항

- (취약분야 진단) 감사인원 및 감사범위 중복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근 2년간 특정·성과감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고 개별 위험평가 결과 고유위험²⁾이 높은 리스크·회계 분야를 중점 점검

구 분	감사 중점사항
내부통제 구성요소별 설계·운영의 적정성 확인	■ 내·외부 경영환경 변화 등에 대비하여 내부통제 소관부서별 기능과 책임의 적정성 확인 ■ 경영위험 사전예방을 위한 정보수집 시스템 및 부서간 의사소통, 주기적 모니터링 등의 내부통제 구성요소의 원활한 작동 여부 확인
리스크·회계관리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 내부통제 수행 상의 미비점 점검을 통한 통제위험 제거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 선제적·자율적 내부통제 모범사례 발굴·포상

1) 내부통제의 정의: 운영상의 능률성과 효과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규의 준수 등의 목표달성과 관련한 납득 가능한 확신(reasonable assurance)을 얻기 위해 설계되어 기관의 이사회, 경영진, 기타 구성원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

2) 고유위험(Inherent Risk): 내부통제 시스템 및 자체감사기구(감사실)가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 부정·착오 등에 의하여 회사에 재정적 손실(예: 횡령, 손해배상책임, 재정적자 등) 또는 비재정적 손실(예: 업무비효율, 평판리스크 저하 등)이 발생할 위험

3 감사인원 및 기간

□ (감사인원) 박중훈 팀장, 김지인 감사역

감 사 인	업 무 분 장	감사방법
○○○ 팀 장	■ 특정감사 업무 총괄	서면 또는 실지감사
○○○ 감사역	■ 내부통제 구성요소별 설계·운영의 적정성 확인 ■ 내부통제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 (감사기간) 2017. 8.28.(월) ~ 8.30.(수) [3영업일]

○ 예비조사 : 2017. 8.18.(금) ~ 8.24.(목) [5영업일]

4 감사범위 및 대상부서

□ (감사범위) '15~'17.8월 현재 내부통제 조직 및 절차, 업무분야별 내부통제 기준 및 부서별 내부통제 운영활동

○ (통제요소의 적정성) 내부통제 구성요소별 설계·운영의 적정성 진단

구성요소	평가요소	점검사항
통제 환경	임직원 도덕성·청렴성, 전문성에 대한 경영의지, 조직의 권한과 책임 위임	윤리규범, 임직원의 책임·권한 설정
위험평가	전사목표관리, 위험의 식별·분석	위험의 식별
통제활동	임직원 참여도, 자산보호	현업부서 통제활동
정보·의사소통	정보수집 시스템 및 내외부 의사소통	대외 공시·보고
모니터링	내부통제의 적정성 내부통제 평가의 적정성	통제활동의 평가·환류 적정성

※ 참고사항: 별첨1 내부통제시스템 적정성 점검 체크리스트

○ (리스크·회계관리) 리스크·회계 분야의 내부통제 상 미비점 점검

□ (대상부서) 전 부서

II. 분야별 주요 예상 문제점

□ 리스크 관리 및 내부회계관리 등 내부통제의 적정성 점검

순번	주요 내용	접근방법
1	내부통제 조직의 독립성 및 통제기능의 적정성	▶ 리스크관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내부통제조직의 업무분장은 현업부서의 감독 또는 통제조직간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2	내부통제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 소관부서별 내부통제의 역할 및 책임이 명확히 정의되며, 직제 규정 등에 명문화 되어 있는지 ▶ 리스크관리규정·세칙, 회계규정·세칙, 내부회계관리규정 등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적시에 제·개정되고 있는지
3	내부통제 운영의 적정성	▶ 리스크관리시스템은 정부정책, 법령 제개정, 대내외 경제지표 변동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경영위험을 적시에 인식·측정하고 대응절차를 준비하고 있는지 ▶ 리스크 관리계획,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등 내부통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계획에 따른 운영 결과를 (상임)이사회·감사위원회 등에 보고하고 있는지 ▶ 내부통제 운영결과 발견된 미비점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와 공유하거나 자체 개선과제로 수립·실행하는 등 내부통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

□ 리스크 및 회계 분야의 내부통제 취약점 점검

순번	주요 위험내용	접근방법
1	위험자산 산출과 적정자본 보유가 적정하지 못할 위험	▶ 정기적으로 자기자본 대비 위험자산 보유현황을 산출하여 요약하고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는지 ▶ 신용리스크의 급변에 대비하여 자본보유가 적정한 지
2	데이터 정확성 및 완전성 확보를 위한 검증 및 확인절차가 부실할 위험	▶ 상품 관련 데이터가 전 상품을 포괄하여 상품별로 관리되고 있는지 ▶ 신용등급별 부도확률 및 회수율을 적절히 산출하고 최근 자료로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는지
3	시재와 장부와의 금액 불일치 위험	▶ 일일마감 결재시 결재권자가 수기전표 및 출처가 불명확한 가수금·가지금금 등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는지 ▶ 정기적으로 업무분야별 전산시스템 입력내용과 회계원장상의 회계거래 입력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시정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 참고사항: 별첨2 내부통제 적정성 진단 결과 기지적사항(2011~2012년)

Ⅲ. 결과보고 및 사후조치

- ☐ (감사결과 보고) 감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상근 감사위원회에 보고
 - 사규 위반사항 등 발견 시 상근감사위원직무규정 제17조에 의거 조치
- ☐ (감사결과 통보·점검) 감사결과 지적·개선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 통보하고, 매분기 이행실적 점검
- ☐ (감사결과 공유·공시) 감사결과를 사내전산망에 등록(GW-알림나라-자료실-감사자료실)하여 전직원에게 공유하고,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

